

2018년 3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선박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이끄는 해사안전전문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체험형)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1. 채용내용

분 야	근 무 지	배정(명)	임용예정일	업무내용
청년인턴 (체험형)	부산지부 울산출장소	1	'18. 9. 3.(월)	행정/사무보조
	보령지부	1		
	전북지부	1		
	목포지부	1		
	사천지부	1		
	총 계	5		

* 근무지별 지원자가 없거나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인턴유형 : 체험형 인턴(청년층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8년 9월 3일 ~ 2019년 1월 31일

다. 급 여 : 월 1,600,000원

* 2019년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월 175만원 지급 예정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바. 근무지역

구 분	주 소
부산지부 울산출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6길 17(일산동) 3층
보령지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신후동) 대천항연안여객터미널 3층
전북지부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92, 백토빌딩 4층
목포지부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5(항동)
사천지부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서동) 24-5 삼천포수협 2층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15세 ~ 만 34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나. 학력 :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다. 채용공고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채용공고일 당시 인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제외대상에 포함

* 우리 공단 체험형 인턴 경험이 없거나 2회 미만인 자만 응시 가능

라.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마.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고등·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을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인 사람
 - 미대상 예시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고교 졸업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 졸업, 수도권 소재 대학교 졸업 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세대주

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나.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라. 우대조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나~라」의 경우,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시 제출하며, 면접 이후 서류 일체를 반환 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E-mail(jhj7013@kst.or.kr)로 신청

5.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고 및 접수	'18. 7. 30.(월) ~ 8. 14.(화) 14:00	우편 및 방문, E-mail(jhj7013@kst.or.kr)로 접수 가능 * 접수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선박안전기술공단 7층 인재개발실 * E-mail 제목은 반드시 “근무지-성명”(000-홍길동)으로 기재
서류전형	'18. 8. 16.(목) ~ 8. 17.(금)	결격여부, 분야별 지식, 채용적합성 등을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8. 20.(월)	공단 홈페이지(http://www.kst.or.kr)에 면접일정 등 게재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18. 8. 23.(목)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분야 역량, 태도, 건강상태 등 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18. 8. 27.(월)	공단 홈페이지(http://www.kst.or.kr) 및 개별통보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2배수 이내로 할 수 있음
임용예정일	'18. 9. 3.(월)	해당 지부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여러 지부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예정일로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마. 본 계획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공단 인턴 경력자 중 일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직원으로 선발되는 인원에게는 표창 및 정규직 채용 시 가점이 부여 됩니다.
- 사. 기타 사항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재개발실 정혜진(☎ 044-330-2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2매 이내)

※ 출신학교, 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하게 된 동기 등 자기소개서를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작성요령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 * 입력공간이 모자랄 경우 양식 편집 가능
 - * 단, 접수번호는 응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작성하는 부분임.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 ① 성 명 : 한글, 한자,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 ② 주 소 : 우편번호 및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 ③ 연 락 처 : 전화번호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④ 주요 경력사항 : **해당자만 기재**
 - 회사명 및 담당 업무, 근무기간을 기재하되, 경력 증빙서류 사본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시 제출
 - ⑤ 자 격 증 : **해당자만 기재**
 - 자격증명 및 취득년월일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시 제출
 - ⑥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지원하게 된 동기 등 자기소개서를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⑦ 저소득층 여부 : **해당자만 √ 체크**
 - 증빙서류 사본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시 제출
 - ⑧ 취업지원 대상 및 장애,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부 : **해당자만 √ 체크**
 - 증빙서류 사본은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시 제출
 - ⑨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지원하게 된 동기, 경험 또는 경력 등의 활동사항 등 자기소개서를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